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장 애 인 연 금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장애인연금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“전국 단위 장애인연금 신청 도입(안 제7조)”

장애인연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연금법」이 개정(법률 제18221호, 2021. 6. 8. 공포, 2022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“장애인연금 급여액 관련(안 제5조, [별표1])”

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범위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소득 하위70%) 이하이어야 하므로, 이를 고려하여 기초급여액 감액 규정 및 부가급여액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2만원 이하”를 “0원 이상 2만원 이하”로 하고, 같은

조 제3항제1호 중 “4만원 이하”를 “0원 이상 4만원 이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.

별표 1에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

별표 1 제4호의 월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만원
4만원
0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) ① (생략)	제5조(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득 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: 2만원	1. ----- ----- 0원 이상 2만원 이하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	1. -----

2. (생 략)

제2조(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) ①
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
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
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
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
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
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
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해
야 한다. <후단 신설>

1. ~ 7. (생략)
② · ③ (생략)

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) ①

-----.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
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신청
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
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
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
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
한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21